

김민성. 2023. “환경권의 의미 확장을 위한 시론적 고찰” 『인권연구』 6(1): 101-147.  
Kim, Min Sung. 2023. “An Exploratory Study for Expansion of Meaning of Environmental Rights”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6(1): 101-147.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3.6.1.101>

[일반논문]

## 환경권의 의미 확장을 위한 시론적 고찰

: 서산 대산공단 인근 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김민성\*

한글초록

최근 심각한 전지구적 기후붕괴 국면에서 환경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 중에서도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전환적 태도를 강조하는 담론에 주목하면서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의 형태를 제시한다. 그동안 세대별 인권 개념 속에서 환경권은 공간적, 내용적 범위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인정이 요구되는 권리’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집단의 권리와 연대를 강조하는 환경권은 오늘날의 환경오염,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선포된 환경 관련 ‘인권정전’을 범주화하고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실제 환경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개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가령 수십년간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충남 서산 대산공단 인근 마을 주민의 경우, 지구와 생명공동체의 보호를 고려한 자원이용, 환경보호와 평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과 인권에 대해 교육받고 정보에 접근할 권리, 환경재난에 대한 법적 구제 및 보상받을 권리, 건강한 생태환경에서 발전할 권리, 환경오염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저항할 권리를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침해받고 있었다. 이들은 때로 권리 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주목할 점은, 권리보유자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를 설정하여 책임을 묻는 데 환경권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 사회학 박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연구위원.

서는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개념을 구체화하여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유용한 도구를 제시한다.

주제어: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환경문제, 환경권, 세대별 인권, 대산공단, 기후변화

## 목 차

1. 들어가면서
2. 세대별 인권개념의 한계와 ‘인권 통합적 접근’의 대두
3. 환경권의 이해와 함의
4. 서산 대산공단 인근 주민 사례로 보는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5. 나오면서: 실제적 환경권 구성을 통한 인권 담론의 확장

### 1. 들어가면서

가까운 미래<sup>1)</sup>에 전 지구적 기후재난이 폭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자명하다(unequivocal) 밝히면서(IPCC, 2021: 4), 지구온난화의 가속

1) IPCC는 온실가스 배출 지속으로 온난화가 심화되어 가까운 미래(the near term), 즉 2021~2040년 내 지구 온도가 1.5°C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에서 제시된 2030~2052년보다 앞당겨진 시점이다. 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먼 미래(2081~2100년)의 사회경제상 또한 제시(SSP 시나리오)한다.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당장 적용된다면(SSP1-1.9), 먼 미래에 전 지구 지표면 온도는 1.0~1.8°C 오를 것이다. 그러나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집중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된다면(SSP5-8.5), 전 지구 지표면 온도는 3.3~5.7°C 상승할 것이다(IPCC, 2021: 285).

으로 2040년 내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IPCC, 2022: 13).

자연재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도 달라졌다. 기후변화의 결과가 재해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이상신·채희문, 2010: 67). 폭우와 폭염, 가뭄, 산불 등은 이제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여겨진다. 기후변화 대응 또한 자연재해를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 시스템에 가해지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진다.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농업 및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메탄,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 등은 기후붕괴를 유발하는 주요인이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연소 및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다.<sup>2)</sup> 이에 2010년 국회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었지만, 미비한 후속 조치로 인해 탄소배출량은 2010년 대비 2020년 103백만 톤을 초과했다.

국제사회의 기후위기대응 흐름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는 2021년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두고 각계의 반발이 잇따랐다. 시민사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기후위기의 엄중함을 외면한 것이라 비판했고<sup>3)</sup>, 산업계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제조업의 실상을 고려

2) 2020년 기준, 한국은 총 656.223백만 톤 CO<sub>2</sub>eq.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며, 이는 10년 전인 201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656.120백만 톤 CO<sub>2</sub>eq.)인 103백만 톤을 상회하는 양이다. 2020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부문은 에너지 산업(569.917백만 톤 CO<sub>2</sub>eq.)이다(환경부, 2023.4.13 검색).

3) 2021년 8월 개최된 IPCC 제54차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역별 기후영향인자(Climatic Impact-Drivers)의 변화를 예측한 내용이 담긴 ‘IPCC 제 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가 승인되었다. 보고서에는 지구온난화가 심해질수록 동아시아 지역의 폭염 등 더위 관련 기후영향인

하지 않은 조치라 지적했다(중앙일보, 2021.10.10.).<sup>4)</sup>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같은 해 5월 출범한 대통령 산하 탄소중립위원회 또한 청년·노동·농어민 등 기후위기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된 구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IPCC는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가 개인, 지역, 국가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다(IPCC, 2022: 1180). 이는 기후문제에 대한 권리보유자, 의무담지자의 지리적·문화적·사회적 영향과 피해가 각기 다르며, 환경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문제가 다층적인 것임을 암시한다.

이에 그동안 기후위기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정치철학, 환경사회학 등에서는 정의와 관련된 도덕이론을 바탕으로 분배적 정의의 필요를 논하면서, 실천 담론으로써 환경정의를 제시한다. 최근 등장한 지구법학에서는 인간이 의식과 의지라는 행위주체성(Agency)을 가졌음을 강조한다. 즉 인간은 주체적 존재로서 지구 또는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으며, 인간의 활동을 통해 발생한 환경문제는 인간이 자연의 권리를 옹호할 때에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환경권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전환적 태도를 강조하는 위의 담론을 관통하고 있는 인권개념이라는 것이다. 환경

---

자가 증가할 것이며, 호우와 홍수 또한 빈번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담겼다(IPCC, 2021: 118). 또한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C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되었다(IPCC, 2021: 189). 그러나 이와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만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 UN에 제출했다. 당시 기후위기비상행동, 유엔기후변화협약 COP26 기후정의 한국 실천단 등은 “정부가 산업계의 단기적 이해를 대변하느라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 비판했다(녹색연합, 2022. 4.18. 검색). 산업계는 과도한 감축 정책이 경제적 악영향을 낳을 수 있다 우려했다(한겨레, 2021.10.18.).

4) 이후 2023년 3월, 정부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기존대비 3.1%p 줄인 탄소감축계획을 발표했다.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려는 환경정의, 실정법 내 환경권 개념을 재정의하려는 지구법학의 시도는 모두 전통적인 인권 규범 속 환경권의 변화를 추동한다.

이에 본 논문은 그동안 소극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제3세대 권리인 환경권 관련 담론을 개관하고 그 함의를 분석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환경권을 새로이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남 서산 대산공단 인근 주민이 겪고 있는 오래된 환경문제, 즉 사회적 난제를 사례로 가져와 환경권의 규범적 논의를 확장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첫째,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환경문제가 인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둘째, 국제인권규범 및 선언에 담긴 환경권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환경권의 전체적인 형태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론에서는 환경권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토대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3세대 인권 중에서도 환경권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할 것이다.

## 2. 세대별 인권개념의 한계와 ‘인권 통합적 접근’의 대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현대적 개념으로서의 인권은 유럽 계몽주의의 유산을 이어받은 18세기 서구의 사회계약 사상과 20세기의 국제 인권장전 제정으로부터 발전해 온 것이다. 인권개념은 그동안 세 가지 세대별 영역으로 구분되어왔다. 19세기 중엽, 독일의 법학자 게오르그 옐리네크(Jellinek, 2006)는 인권 발생 및 증진 과정에 따라 인권을 자유권, 정치적 권리(수익권), 사회적·문화적 권리(참정권)로 구분하였다. 이는 실증주의적 법학 방법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후 카렐 바삭(Vasak, 1977; 카렐 바삭, 1986: 80-83)은 변화된 국제상황에 맞추어 세대별 인권개념을 제시하였다. 1세대 인권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자유, 안전, 육체적 및 정신적 보전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여기에는 생명권, 고문금지, 노예와 예속 금지, 법의 평등한 보호, 법적 구제, 자유와 인신의 보호, 사생활·가정·통신의 자유, 사상·

양심·종교의 자유, 그리고 견해와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통치에의 참여 등과 같은 권리가 포함된다. 1세대 인권은 정치 개념으로 시작한 인권의 특성을 반영하며, 국가의 불법적이고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2세대 인권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는 공정하고 양호한 노동 조건, 노동할 권리, 노동조합, 사회보장권, 적절한 생활 수준,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 건강권·교육권·문화 및 과학에 관한 권리 등이 담겨있다. 인간은 누구든 가능한 오래 살면서 좋은 건강 상태를 누리고,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느 인간도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없다. 사회권은 인간의 근원과 필요들에 대한 정당한 도덕적 요구를 담아낸 권리로서(장은주, 2006),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복지의 촉진자이자 보호자로 규정된다.

3세대 인권은 1970년대 초 등장한 새로운 인권개념이다. 이 개념은 북반구를 중심으로 한 초국적 경제 권력의 극단적인 이윤추구 과정, 즉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확대에 남반구에 발생한 불평등을 다루는 정치적·윤리적 담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권혜령, 2018). 주로 국가-개인 간의 권리를 다루고 국제법 질서상 완성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1·2세대 인권과는 달리, 3세대 인권은 집단이라는 범위, 연대라는 비구속적 특성, 각종 권리가 섞여 있다는 모호함으로 인해 법이론적 정립이 어려워 ‘인정이 요구되는 권리’로 이해되기도 한다(고문현, 2005: 273). 그러나 최근 3세대 인권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권리에 적용될 수 있는 탈경제적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애초 바삭이 3세대 인권을 통해 냉전 이데올로기로 인해 이분화되고 단순화된 인권 담론을 비판하려 했을 정도로 3세대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다. 환경권, 발전권, 평화권, 인류의 공동유산에 대한 소유권, 커뮤니케이션의 권리(Domaradzki, Khvostova and Pupovac, 2019), 그리고 인도주의적 원조와 재난 구조를 받을 권리, 민족 자결권과 같은 3세대 인권의 실현

을 위해서는 이전의 권리 범주와는 다른 특성이 요구된다.<sup>5)</sup> 바로 개인, 국가, 공적·사적 집단, 국제공동체 등 모든 사회적 주체의 협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3세대 인권의 강점이자 가장 심각한 약점이 된다.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는 위 집단 간 권리 분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마크 프레초, 2020: 255). 새로운 권리로써 국제인권규범으로 승인을 받는 과정은 무수한 논의와 이론적 정당화를 거쳐 단계적, 점진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점도 3세대 인권의 가능성과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권혜령, 2018).

그런데 이러한 세대별 인권개념이 실제 발생한 권리 침해 상황에 정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는 당초 세대별 인권이 인권 인식 공동체에 포함된 학자, 정책 결정자, 활동가 등을 위해 분석적, 교수법적, 정치적 유용함을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다(마크 프레초, 2020: 87). 인권에 대한 세대론은 자유권과 사회권 사이의 왜곡된 구분을 강화하며, 모든 인권의 실현에 핵심적인 연대의 의미를 희석한다(이주영, 2017: 35). 인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 실행, 위반되는 살아있는 객체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인권에 대한 최근의 역사학적 연구들 또한 인권의 기원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필연적 연속성을 해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자연권 이념이 근대의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원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정진성, 2013), 근대 민주정치 기획의

---

5) 3세대 권리는 UNESCO에서 특히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1978년 UNESCO 평화·인권 분과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원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 모임(Expertentreffen)’을 구성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인권의 새로운 범주로서 연대권을 확인하고, 경제발전권, 평화권, 깨끗한 환경권 및 인류공동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시하였다. 이후 개최된 제20차 UNESCO 총회에서는 바샤이 제시한 다섯 개의 인권 외에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be different)’, ‘인도적 도움을 요구할 권리(Recht auf humanitäre Hilfe)’가 제시되기도 했다(고문현, 2005: 270-271).

재발견, 근본원인 분석, 나아가 인권운동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조효제, 2018: 66). 기존의 가치체계를 당연한 전제로 삼지 않으면서 권리가 구현될 수 있는 구조적 조건과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연구하는 인권 통합적 접근이 또한 이러한 흐름을 대변한다.

인권이 실현될 확률적 개연성은 인권에 대한 이론적 이해 및 국내의 인권 규범, 그것의 사법적 집행뿐만 아니라 인간 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집합적 수준에서 인간 행동 발현의 조건, 여건, 환경을 분석하는 데 사회학적 접근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아래에서는 환경권 형성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를 역사적·맥락적으로 구성해 보고, 인권의 규범적 이해에 더해 인권실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할 것이다.

### 3. 환경권의 이해와 함의

환경권은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여 얻어진 결과물이다. 환경권을 포괄하고 있는 3세대 권리는 케인스주의의 쇠락, 국가사회주의의 몰락과 같은 일대 사건들이 발생한 1970-80년대 제3세계 개발주의의 막바지에서, 즉 세계화의 시작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60-70년대 신생독립국가들이 주창했던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운동으로 평등한 국제 경제질서에 대한 열망이 표출되자(이주영, 2017: 38), 유엔은 대안적 발전이라는 이들의 비전을 수용하면서 1986년 발전권 선언을 채택한다. 비록 발전권 선언 속에 자연의 권리 내지는 자연환경의 보존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1992년 리우선언과 이듬해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선언으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주창되면서 지구환경 보존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지구환경을 일종의 공유재로 본다면, 이 재화는 공적 재화처럼 모두가 사용 대상이 되는 ‘비배제성’, 그리고 동시에 사적 재화처럼 누군가의 소비가 누군가의 소비 기회를 줄이는 ‘경쟁성’의 특성을 가짐

을 알 수 있다(Blau and Moncada, 2009: 123-124). 이러한 관점으로 지구 구성원 모두의 서식처인 자연을 이해한다면, 자연환경은 성장 중심주의적 개발 앞에서 절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은 건강한 개인과 모든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는 존재로 여겨져야 한다. 따라서 환경권은 공통의 이익과 공통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집단적 연대권’과 함께, 서로 나눌 수 없는 문화적·환경적 재화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며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괄하는 권리로 다뤄질 수 있다(마크 프레초, 220: 248-254).

1, 2세대 인권이 이행된 방식과 마찬가지로 환경권 또한 제도 및 규범화를 통해 현실화되어 왔다. 특히 환경권은 국제인권규범을 환경문제의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정립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가 구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아래에서는 환경권과 관련된 국내의 인권 규범의 흐름을 살펴본다.

### 1) 국내인권규범에서의 환경권 이해

국내법상 환경권은 1980년 헌법 제33조를 통해 처음으로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되었다. 1987년 전면 개정된 현행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환경권을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고,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이라 명시한 바 있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결정). 신체의 자유, 생명권, 건강권 등과 구별되는 환경권의 독자적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박시원, 2019: 60).

그동안 국내 다수의 법학자 또한 환경권을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권영성, 2010), ‘인간다운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김철수, 2013), ‘좋은 환경을 향유하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쾌적한 생활을 구하는 권리’(구병석, 1990) 등으로 정리하는 데 동의해 왔다. 위의 개념은 공통적으로 환경권이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며, 인간 생존에 절대적이고,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는 천부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아내고 있다. 이를 수렴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환경권을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구도완, 2005).

그런데 헌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를 법률유보사항으로 규정한다. 이는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 당시 도입된 환경권 개념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기보다는 당시 국제정세에 따르기 위한 조치로써 마련된 것이었기 때문이다(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구도완, 2005). 경제발전을 우선했던 국가성장 이데올로기의 영향 속에서 환경권은 국가의 의무나 보장범위에 대한 언급 없이 소극적으로 규정되어왔다.

이에 최근 기존 헌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환경권이 단순히 인간이 쾌적하게 살아갈 권리가 아닌,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함께 살아갈 권리’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소병천, 2009: 280). 앞서 언급된 지구법학 담론은 근본적으로 국민국가 단위의 영토를 기반으로 마련된 법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근대 이후 자유주의 헌법 체제의 실패가 지구 생태 위기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 주장한다(김헌준, 2020: 167). 이를 바탕으로 최근 국내 각계 법 전문가들은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2016)>을 통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더불어 누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또한 장래[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환

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공동 생명체로서 동물은 부당한 고통과 대우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이익을 위하여 동물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입법과 행정,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오동석, 2020: 178-179). 개인과 집단이 최대한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 환경문제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인 책임과 행동의 필요성을 명시한 위 내용은 인류 역사의 전 과정에서 드러난 자유·평등·연대·민주주의·참여·평화·생태계 보전과 같은 소중한 가치를 강조한다.

한편 최근 국회 계류 중인 기후위기 대응 법안에서도 환경권에 대한 전환적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기후위기 대응법안」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고려한 사회적 안전망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겨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또한 탄소중립 이행에서의 세대 간,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다.

## 2) 국제인권규범에서의 환경권 이해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의 지위를 가지는 국제인권법, 실질적으로 중요한 규범적 의미를 가지는 연성법(soft law) 성격의 국제 인권문서와 원칙, 권고 등을 ‘국제인권규범’이라 한다. 국제인권규범은 국가주권주의를 토대로 구성되어온 전통적 국제법 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규범적 관계에 과제와 지향점을 제시해왔다(신윤진, 2021: 114). 국제규범 내 환경권의 제도화 과정에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절차적 권리에 관한 것인데, 이는 국가별로 생태적·사회경제적 조건, 환경오염 유발원이 달라 실제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규정하기 모호했기 때문이다(Anderson, 1996;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구도완, 2005: 23).

국제사회에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기점으로 환경권 관련 논의가 확산되었다. 2004년 기준, 191개 UN 회원국 중 109개 국가가 환경 또는 천연자원 보호를 헌법에 명시해두고 있다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구도완, 2005). 대표적으로 에콰도르는 헌법 전문에 “자연의 다양성과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양식의 공존 질서”를 명시하여 좋은 삶의 방식(the good way of living)이라는 의미의 ‘부엔 비비르(Buen Vivir)’를 성취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도를 반영하였다. 에콰도르 헌법상 자연은 ‘존재 자체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권리’, ‘회복될 권리’를 가진다. 인간 이외의 존재들도 천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에콰도르 법원은 ‘빌카밤바강(Vilcabamba River) 사건’ 등을 통해 자연의 권리 조항을 원용한 원고승소판결을 내리면서<sup>6)</sup>, ‘원고는 자연의 권리를 위하여 제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자신의 손상이 아니라 자연의 손상을 증명하면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 인도 고등법원은 2017년 갠지스(Ganges)강과 야무나(Yamuna)강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두 강이 법인(legal person)의 지위를 갖는 살아있는 실체라 판단하였다. 이 외에도 콜롬비아 헌법 재판소의 아마존 지역 권리 인정, 남아프리카공화국 최고법원의 혼합 채취에 대한 원주민 공동체의 관습법 지지 판결, 볼리비아의 ‘어머니 지구 기본법(Framework Law of the Mother Earth and Integral Development for Living Well)’을 통한 파차마마(Pachamama)<sup>7)</sup>의 법

6) 이 소송에서의 원고는 Richard Frederick Wheeler, Eleanor Geer Huddle로, 이들은 2007년부터 에콰도르에 정착한 외국인이다. 이들은 빌카밤바 외곽에 거주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평화적 공동체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중, 로야(Loja) 지방정부가 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하천에 무단 투기하여 유역과 주변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자 원고의 재산 및 강의 이익을 위한 소(보호조치 청구)를 제기한다. 이하 빌카밤바강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https://www.therightsofnature.org/first-ron-case-ecuador/> 참조(2021년 9월 16일 접속).

7) 안데스 원주민들에게 신앙의 대상인 영적존재로 ‘어머니 대지’로 번역

적 권리 확정, 물질적 생산과 소비에 대한 국가 목표 거부 등의 사례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고찰한 전 지구적 전환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박태현, 2020).

유엔환경계획(이하 UNEP) 또한 ‘환경권 계획(The Environmental Rights Initiative)’하에 지속적으로 인권과 환경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다. UNEP는 2012년부터 인권과 환경 간 증진 방안, 인권과 기후변화, 생물의 다양성 등을 위한 특별보고관 자문 및 전문가 세미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로키움을 시작으로 헌법 내 환경권에 대한 사법 민감성 확대 방안 및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UNEP, 2021년 9월 16일 검색).

유엔인권이사회(이하 UNHRC)에서도 환경과 관련한 적극적 판단 및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이누이트 기후변화 청원 사건은 기후변화를 인권 문제로 접근해 구제를 시도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 사건 이후 ‘인권과 기후변화’에 대한 결의가 채택되었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이하 OHCHR) 또한 인권과 기후변화 관련성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하였다. UNHRC는 기후변화에 대하여 인권적 사고를 돕는 한편 관련 문제에 대한 분명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기후변화와 인권에 대한 연구팀’을 발족시켰다. 이후 2008년 채택된 인권과 기후변화 결의안(결의 7/23)에는 기후변화가 인간과 공동체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위협을 야기하고 인권의 완전한 향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담겼다. 특히 이 결의안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인권의 목록이 제시되었다. 기후변화는 생명, 적절한 식량, 깨끗한 물, 건강, 주거, 자결 등에 관한 인권을 침해한다(박병도, 2019; 조운재, 2019). 몰디브의 수도 말레에서는 2007년 ‘전지구적 기후변화의 인간 측면에 관한 말레선언’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 선언에는 환경은 인류 문명의 인프라로써 기후변화는 이를 위협하고, 모든 인간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기본권이 있다

는 주장이 담겨있다. 기후레짐에서 공식적으로 인권이 언급된 것은 2010년 기후변화 협약 제16차 당사자 총회(COP-16)에서다(조효제, 2020). 당시 채택된 칸쿤 협의(Cancun Agreement)에는 미국과 주요 개도국을 의무부담국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외에도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환적 결정은 지속되고 있다. 2019년 OHCHR은 해수면 상승은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으며 기후위기로 터전을 떠나는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Ioane Teitiota v New Zealand*, 2020).<sup>8)</sup> 나아가 파라과이의 소농들이 제기한 청원(*Portillo Caceres v Paraguay*)에서는 환경보호와 생명권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기업의 대규모 농약 사용이 지역 주민 다수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고, 효과적인 방지책을 시행하지 못한 국가 때문에 해당 지역 소농들의 생명권, 가족과의 사생활 및 가정의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 3)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앞서 언급하였듯 인권 규범의 이행에서 절차적 권리만을 강조한다면 실제 인권을 형성해 나가는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려워진다. 이제 인권 담론을 형성하는 주체는 유엔기구,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사회운동조직, 지역사회단체, 기타 사회적 행위자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들 모두 각자 수행하는 캠페인이나 정책,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덕적·정치적 기준으로 국제 조약, 선언, 발표 등의 인권 문헌들을 활용한다. 따라서 인권 증진을 위한 모든 조치는 국내외 인권규범의 성격을 포괄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인권 동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권학자 마크 프레초(2020: 324-325)는 인권정전(正典)이라는 개념으로써 국내외 인권 문헌 및

---

8) 이는 2018년 채택된 생명권에 대한 일반논평에 근거해 극단적 환경변화가 생명권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Le Moli, 2020).

선언 등 각종 인권 활동을 통칭하여 인권 이해 및 실천의 폭을 넓힌다.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 이들을 돕는 단체, 이들에 공감하는 연구자와 법률가 등은 인권정전을 해석하여 권리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권리 동맹 또한 현존하는 인권 문헌의 장점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권 정전의 내용, 해석, 실행에서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취약지역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권과 관련된 인권정전을 적극 활용하여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의 윤곽을 잡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인권과 환경문제를 연계하여 생각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 국제사회와 국가-기업, 즉 의무담지자(duty bearers)의 인권 이행 의무를 강화할 수 있다. 인권은 협상이 불가능한 법적 보장책이므로, 환경악화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담지자에게 국제적 인권 기준과 메커니즘을 적용하거나 의무 준수를 위한 논의를 하도록 요구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의무담지자에게 환경불평등 및 환경 위협요인을 환기시킬 수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의무이행은 경제적 이익과 동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규범으로서의 인권을 적용하면 강대국과 약소국 간 국제 협상이 보다 평등해질 수 있다. 또한 경제적 기준을 고려해 측정 가능한 오염만을 인정하려는 한정적 태도를 전복하고 의무담지자가 취약 집단이 당면한 환경 위협을 그 자체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든다. 셋째,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권리보유자(rights holder)가 합당한 배상과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환경문제에 취약하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넷째, 정의감에 근거하고 있는 인권의 특성으로 환경위기 해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제도나 행정의 한계로 발생한 인권 문제가 특정한 계기로 사회에 부각 되듯이,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환경문제를 의제로 만드는 언어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인권의 이름으로 자력화 할 수 있다.

Francioni(2010)는 환경보호에 대한 현재의 인권적 접근을 지속하되 보다 상상력과 용기 있는 인권 법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이주영, 2017: 49). 환경문제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영역뿐만 아니라 환경과 인권에 대한 다각적 인식이 필요하다. 이에 아래에서는 인권과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권정전의 흐름을 살펴본다.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앞서 언급된 환경권에 대한 전환적 인식, 즉 ‘개인 및 공동체, 지구 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최대한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이자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 또는 훼손을 예방할 인간의 의무’라는 내용을 온전히 반영한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환경질을 측정가능한 수치로 치환하여 권리의 보장 수준을 재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인식(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구도완, 2005)내지는 인권과 환경이 내재하고 있는 의미와 가치의 상호관계를 확정하는데 따르는 인식론적 불안정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유엔에서도 실질적 권리로써 환경권을 주창하기보다는 환경과 인권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해 왔다(이주영, 2017).

1948년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제25조)’를 통해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 보장의 필요를 언급하며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기본적 권리로써 처음으로 인권과 환경의 관계가 인정된 것은 1968년 UN 총회였다(Res. 2398(XXII)). 이윽고 1972년 제1차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에서는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선언(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이하 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하여 환경권을 현실화했다(이은기, 2015: 326). 이 선언은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이 생태계의 구성원인 인간의 의무이고, 국가 및 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인간 생활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개괄적인 환경권의 형태를 제시한다.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유엔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하 리우선언)을 채택하여 스톡홀름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두 선언에 포함된 규범적 내용의 중요성을 강화하였다(Handl, 2012: 3).

위의 두 선언은 당시 관습적인 국제법을 반영하면서 미래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환경규범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인권과 환경권 간의 관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법적·정치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의를 가진다(김홍균, 2008: 3).<sup>9)</sup> 그러나 외교 회의 선언의 특성상 두 선언은 실질적인 환경 대책을 마련할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리우선언은 깨끗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도 주지하지 않은 채 인간을 개발의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스톡홀름 선언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김홍균, 2008: 60).

생태중심주의, 지구법학 등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중시하는 시각에서도 스톡홀름 선언과 리우선언을 모두 인류의 번영을 위한 환경보호를 선언하는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의 산물로 여긴다. 이에 리우 회의 이후 국제시민사회는 민간차원의 ‘지구헌장’을 구상하여 유엔 및 국제사회의 참여를 도모해 왔다. 1997년 ‘지구헌장위원회’의 출범, 2000년 지구헌장(Earth Charter)의 합의가 이러한 노력을 보여 준다. 인간을 위한 객체로써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탈피한 이 헌장에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구생태계 보존과 자연에 대한 존엄성, 인권, 경제적 정의, 평화문화, 개인과 사회,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환경과 인권 간의 구체적인 관계는 세 가지 국제규약, 즉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9) 유엔환경개발회의는 리우선언과 함께 ‘의제 21(Agenda 21)’, ‘생물 다양성 협약(Biodiversity Convention)’, ‘기후변화협약(Climate Change Convention)’ 등을 채택하여 분야별 환경문제를 고찰할 수 있는 환경권 이행의 실질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ICESCR)<sup>10)</sup>, 아프리카 헌장(African(Banjul)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산살바도르 의정서(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Social and Cultural Rights(or Protocol of San Salvador))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세 문헌은 기존의 인권 정진과 같이 환경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의 환경 담론을 고려한 환경권의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Sands, 2003: 294).

가령 식민지 해방 이후 탈식민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아프리카는 국가 간 분쟁을 줄이고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적 인권헌장인 아프리카 헌장을 추진하였다. 환경권을 최초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의를 지니는 이 헌장은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보장조치 및 권리들을 명시하면서 지역 고유의 전통과 풍습의 보존을 강조한다.<sup>11)</sup> 헌장은 환경과 발전을 분명하게 연관시키고 발전을 환경권의 전제로 삼음으로써 환경권의 범위를 개인과 집합, 모든 이의 것으로 확장시킨다(김홍균, 2008: 61).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가졌지만 유럽의 영향을 받아 법학이 발

---

10) 원칙선언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이후 국제사회는 보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국제인권법이 필요함을 통감했다. 이에 1966년 제정된 ICESCR에는 다자간조약으로써 국가가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적시되는 한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인권의 온전한 향유가 가능함이 명시되었다. ‘도달가능한 최고상태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조건 및 환경 등이 개선’되어야 함은 ICESCR의 핵심 내용이다. ICESCR은 오늘날까지도 지속 연구되면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3세대 인권의 대두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11) 아프리카 헌장 제61조의 원문은 이러하다. “제4장 적용 가능한 원칙. 제61조. 위원회는 아프리카단결기구 회원국들이 명백히 승인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일반 또는 특별 국제협약,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아프리카의 관행, 일반적으로 법으로서 수락된 관습,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은 물론, 판례와 학설 등을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고려한다.”

달했던 미주에서는 국제인권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통해 1945년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선언’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선언 내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보장이 미흡했음을 인지하고 1988년 산살바도르 의정서를 비준하였다(김철수, 2020: 244). 산살바도르 의정서는 권리가 입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해두고 있다(김홍균, 2008: 61).

1998년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는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적절한 삶의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환경 관련 의사결정에서의 대중 참여, 정의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리우에서 세워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제10대 원칙’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가 됨에 따라 1986년 유엔은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통해 모든 권리는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의 특성을 가지며 전체적 맥락 속에서 권리가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발전권 선언에 담긴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국내외적 수준의 다양한 법적 조치, 정책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1994년에는 유엔인권위원회(UNCHR)가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Draft Principles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The Ksentini Principle<sup>12)</sup>)을 통해 인권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는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하다는 것을 밝혔다. 여기에는 보다 분명한 환경권의 형태가 제시되었다.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여 인권을 20세기의 주요 테마로 만

12) 알제리 출신의 유엔인권위원회 소속 인권 및 환경 특별보고관 Fatma Ksentini는 1990년부터 환경인권조사에 착수해 1994년,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생태계의 보존과 유지가 인권과 직접 연결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보고서 끝에는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이 제시되어있다. 해당 원칙이 Ksentini 원칙이라고 불리는 까닭이다.

든 것처럼, 최근 국제시민사회에는 지구환경의 위기에서 ‘세계지구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Mother Earth Rights)’을 통해 지구와 생태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정혜진, 2020: 136). 이 선언은 법적 주체로써 자연을 적극 수용하며, 권리의 범위를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인권과 환경의 관계는 세계자연헌장(1982), 헤이그환경선언(1989), 독립국의 토착민과 부족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1989), 국제자연보호연맹 환경과 개발에 관한 초안(1995)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발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하고 서로 상반되기도 하는 국내외적 논의와 규범 등을 수렴하여 인권으로서의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as a human right)을 ‘개인 및 공동체, 지구 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최대한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이자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 또는 훼손을 예방할 인간의 의무’라고 정의한다.

이상 언급된 인권정전의 내용을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으로 범주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3)</sup>

<표 1>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의 여섯 가지 범주

범주	내용
지구와 생명공동체의 보호를 고려한 자원이용	지구와 생명 공동체를 보호할 의무
	환경보호를 고려한 자원 이용
	온전한 생태환경에 대한 권리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 설립 및 정책 시행
	환경보호를 고려하여 개발 및 발전할 권리

13)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의 여섯 가지 범주’를 위해 검토된 인권정전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인간과 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지구헌장,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프리카 헌장, 산살바도르 의정서,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 세계지구권선언.

범주	내용
환경보호와 평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평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보호에 대한 적극적 대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시행
	역사적·문화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호 조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과학과 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릴 권리
환경과 인권에 대해 교육받고 정보에 접근할 권리	환경약자의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보호 및 지원
	환경위험 교육 및 과학, 기술, 문화의 공평한 발전을 위한 조치
	환경과 인권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
환경재난에 대한 법적 구제 및 보상받을 권리	환경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
	환경오염 피해의 책임 및 배상과 관련된 국내외 법제 발전에 적극 협력
	환경을 이유로 강제되거나 되지 않고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와 보상을 받을 권리
건강한 생태환경에서 발전할 권리	재난 등의 이유로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 원조받을 권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및 기업, 각종 국제기구의 지원 및 협력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장
	만족스러운 생활 조건 속에서 발전할 권리
	행복과 존엄을 주는 환경 속에서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환경오염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저항할 권리	건강한 생태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무력 및 환경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
	환경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보장
	환경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권리
	환경과 문화를 보존 및 증진하고 환경오염에 저항할 권리

#### 4. 서산 대산공단 인근 주민 사례로 보는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인권정전 분석을 통해 6가지 권리로 범주화된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은 그동안 환경문제의 해결과 대책 마련을 위한 패러다임 속에서

형성된 환경권, 특히 절차적 권리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된 환경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아래에서는 실제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이 환경오염 피해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충남 서산은 기후위기의 원인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다. 서산 독곡리, 대죽리 일대에 조성된 대산석유화학단지(이하 대산공단) 내 업체들은 석유제품을 생산·유통하면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대산공단 내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은 국내 온실가스 최대배출업체 20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2021년 기준. 서울파이낸스, 2022년 10월 31일). 공단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오·폐수 또한 해양과 토양을 오염시킨다. 황산화물, 카드뮴, 납, 수은,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도 인근 마을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자 그동안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환경 및 건강위해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충남도는 2013년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에 착수하였다. 충남도 내 주요 환경오염지역인 발전소 인근 4개 지역, 당진철강단지 및 서산석유화학단지 주변 등에 거주하는 주민 482명의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 인원 다수에서 기준치를 넘는 요충 비소가 검출되었고, 철강단지 인근에서 그 수치가 가장 높았다(단국대학교 의료원 환경보건센터·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2014).<sup>14)</sup> 발암물질과 유기화합물 배출 또한 심각했다. 주민들은 호흡기계 질병과 스트레스성 질환을 다수 앓고 있었으며(명형남, 2014), 당진화력 주변 지역 주민들의 경우 우울 및 공포 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은 가장 심각한 수

14) 다만 단면연구라는 위 건강영향조사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 원인 인자가 인체유해 정도라는 결과값과 충분한 인과관계를 갖는지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명형남, 2014). 한국전력도 송전탑 등의 시설과 암 발생 원인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대산석유화학시설 주변이 유해한 환경영향인자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각종 질환과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는 김병빈(2004)을 참조.

준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단국대학교 의료원 환경보건센터·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2014). 본 연구는 오랫동안 지역 환경문제로 인해 고통받아온 충남 서산 대산공단 인근 주민들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가 이루어진 위의 지역을 연구의 지리적 범위로 정한다.

인권피해자는 인권침해의 양상과 심각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대상으로, 이들의 진술은 인권침해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올바른 출발점이 될 수 있다(Goodmark, 2005; 이상수, 2015). 면접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이나 현실을 사실과 다르게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관점으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 인권피해자의 관점으로 이루어진 행위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된다(김우창·윤순진, 2019).

심층면접 전 연구자는 화력발전소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각종 문서와 충남도 발간 보고서,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공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헌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의 촘촘한 설계를 위해 5회 이상의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은 이장, 어촌계장, 청년회장과 같은 마을 핵심 지도층은 물론 일반 주민 및 지역 내 환경문제 전문가 등 연구 관계자 등과 광범위하게 접촉하여 최종적으로 마을과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4명을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은 참여자1을 시작으로 1회씩 최대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자 및 면접 내용을 안내하였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의 범주에 기반한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준비하였다. 다만 심층면접 상황에서는 참여자에게 직접 질문지를 제공하기보다 연구자가 참여자의 소속이나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핵심 질문을 던지고, 참여자의 경험과 생각의 흐름에 따라 폭넓은 구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참여자에게는 녹취 내용이 연구에만 사용되며 이후 폐기하겠다는 것을 알렸고, 동의 시에만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사무실 또는 주요 활동공간에서 대담하여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표 2> 심층면접 대상자

구분	성별	나이	지역	거주기간	소속	특이사항
참여자1	여	40대	서산	10년 미만	서산태안 ○○○○연합	해당 단체는 대산일반산업단지 반경 25km 이내에 위치
참여자2	남	50대	서산	10년 미만	한○○○	석유화학기업으로 대산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
참여자3	남	50대	서산	20년 미만	○○○○○ 폭발사고 비상 대책위원회	대산일반산업단지 인근 거주
참여자4	여	40대	충남	타지역 거주	○○연구원	충남 서북부지역 보건환경 전문가

### 1) 지구와 생명공동체의 보호를 고려한 자원이용

충남 서산은 1980년대 중반까지 산업화 및 도시화 수준이 낮았던 곳이다. 당시 이 지역의 유일한 접근로는 장항선 철도<sup>15)</sup>와 국도뿐이었다. 이에 서산은 ‘조용한 오지’로 불리기도 했다. 삼면을 바다와 접하고 있는 대산읍의 대죽리와 독곶리는 예로부터 어염수수가 풍부하기로 이름났던 곳이다. 구릉지와 해안이 공존하는 지형으로 농업에 유리하지는 않았지만 조선 시대부터 소규모 간척농업이 이루어졌고, 소금이 많이 생산됐다. 이에 1945년 광복 이후에도 바다를 매립하여

15)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가 1922년 천안역~온양온천역까지 개통한 사설 철도. 당시 명칭은 충남선이었으며, 해방 이후 국유화 되었다. 1955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종점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의 이름을 따 장항선으로 개칭되었고, 2000대까지 옛 노선 그대로 운행되었다. 2007년 계량화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구간이 복선전철화 및 직선화되었으며, 현재 청량리~신창 간 급행 전철이 운행되고 있다.

염전을 개발하는 행위가 이어졌다. 이러한 특성으로 과거부터 이 지역에는 농수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많이 시행되었다. 다만 충남 내륙 중심지역이나 타 지역과의 공간적·경제적 연계는 저조했다(김홍진·이춘세·김병수, 1995). 하지만 이 덕분에 지역의 생태적 안정성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었다. 농어업을 근간으로 한 지역 특성상 지역 주민들의 정주 기간이 길어 천혜의 경관을 자랑했던 마을의 과거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들도 많다. 과거 풍부한 어족자원을 바탕으로 한 어업 수입은 지역경제의 기반이자 지역 주민들의 가계를 이끄는 동력이었다.

한편, 서산시의 공단 건설은 1977년 서산-대산선 도로 확장 공사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충청남도 서산시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1977).<sup>16)</sup> 이윽고 1980년대 말, 본격적으로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 지역에 공단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넘어요. 근데 이 공단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나라에 개발 붐이 있었고, 그리고 천혜의 생태자원이었던 갯벌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갯벌 매립하고 공장세우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뭐 우리 지역경제에 최고야라고 동의하고 들어왔으나 결국은 갯벌을 터전으로 살던 사람들을 수입도 줄고 자기 일자리도 없어지고 점점 대기는 나빠지고. [참여자4]

1994년 서산시 등이 아산만 광역개발계획에 포함됨에 따라<sup>17)</sup>, 이

16)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비서실장 김정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과 함께 헬기를 타고 서산 대산읍 독곶리의 황금산과 가로림만 일대를 둘러보며 산업도로 건설, 가로림만 매립을 지시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조선일보, 2009년 12월 12일).

17) 건설부고시 제1994-5423호: 17-18. 건설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의 5개 시 9개 군 지역(3,517km<sup>2</sup>)을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1,400

지역은 아산만 광역권을 형성하는 주요 도시로 성장했다. 국토의 균형개발, 중국 등 북방 경제권과의 교류창구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계획의 일차적 목적은 수도권 개발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 있었다.<sup>18)</sup> 이러한 광역권 개발이 채택된 배경에는 제1~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다(김홍진·이춘세·김병수, 1995: 182, 186). 제1차 계획(1972~1981)의 주된 내용은 대규모 공업기지를 특정 지역에 밀어 넣고 대규모 공업기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인구가 공업지역으로 편중되면서 제2차 계획(1982~1991)에서는 정부는 서울과 부산의 성장을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부적격 공업을 이전, 재배치’한다는 관리 방침을 세웠다. 제3차 계획(1992-2001)에서는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기조 하에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개발 및 부문별 계획·관리를 시도했다. 이에 수도권 등 대도시에는 행정이나 연구, 첨단산업 등이 주로 육성되었고, 중소도시의 경우 제조업, 농어촌의 경우 한계농지의 타용도 전용 방안 등이 추진되었다. ‘국토이용의 균형성’이라는 표어 아래 중부와 서남부지역엔 새로운 산업지대가 조성되었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국가의 전방위적 정책은 충남 서북부지역에 산업시설이 연달아 들어서게 만든 강력한 동기로 작용했다. 넓은 구릉지 및 바다와 접해 있다는 지형적 이점, 염가의 간척지, 넓은 미개발지, 수도권으로의 높은 접근성 등과 같은 지리적 특성은 원유 및 원자재 이송의 편리성과 대외무역의 용이성, 부지 가격, 공정상의 편의성 등을 추구하는 기업 입지에 최적화된 조건이었다.

---

만 평에 17개 공단이 포함되는 공업단지를 개발하고 항만 및 주거, 교통 등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18) 대한민국정부 관보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04호, 충남도청의 아산 국가산단 개요 등 국가기록에 따르면, 아산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주된 목적은 ‘수도권의 이전공장을 수용하여 수도권 정비’, ‘수도권 이전 공장의 공업용지 수요에 대처’하는 것이었다.

외국에서 수송해서 원자재가 와야 하잖아요. 그럼 제일 유용한 게 배예요.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곳.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가 갯벌을 가진 곳이 서해안 쪽이잖아요. 동선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하고 어느 정도 합의만 하면. 그 당시에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입지적 조건 때문에 그런거죠. 그러다보니 이쪽 서해안 쪽에 계신 분들은 피해의식도 강해요. 그 당시에는 국가가 나서서 공장 들어서면 잘 산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 버렸고 선택할 수 있는게 많지 않게 됐죠. [참여자1]

다수의 산업시설이 해안 간척을 통해 조성된 부지에 자리 잡으면서, 서산 연안의 리아스식 해안은 직선화되었고 갯벌은 사라졌다. 수면을 고르기 위해 설치한 방파제는 조류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해 생태계 먹이사슬에 악영향을 끼쳤다.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화학약품은 해양 식생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태계를 파괴했다. 석유화학 시설이 늘어나면서 이 지역의 생태계 보전은 불가능해졌고, 마을 주민이 자원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됐다.

## 2) 환경보호와 평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정부가 지역 산업발전을 계획하고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지자체는 지역경제 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업 유치를 허용했다. 기업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약속은 금전적 보상과 함께 쉽게 불식되기 일쑤였다. 정부, 지자체 등은 산업시설의 환경보전 약속 이행 실태 및 오염 감시를 성실하게 지속해야 했지만 충실하지 않았다. 오히려 토지수용, 산업체 건설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자연환경의 적극적 파괴를 용인하였다.

(충남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담당 공무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자체 수장이 큰 틀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기업들도 그를 원하지 않고 쉽게 풀어나가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로 되어서 자기편 만들어서 쉽게 쉽게 풀려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주민들은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 달콤한 유혹에 몇 번 맛을 들었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게 오랫동안 여기에 쌓여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1]

마을에는 점차 식당, 일용직 등 기업과 연계해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이 늘어갔고, 일정 부분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인프라 또한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업이 창출하는 수익, 즉 지역의 각종 자원에 기반한 이익은 지역 주민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기업의 잉여가치가 자본가 또는 수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지역 간, 주민 간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산업시설의 밀집은 일용직 노동자, 1인 가구 밀도를 높였으며 교육, 보건, 문화 등 발전을 상대적으로 저하시켰다. 지역 정주 인구의 감소는 인구의 외부 유출로 이어졌다. 지역을 자생시킬 수 있는 인구 자체가 감소한 것이다. 결국 정부의 강력한 산업화·도시화 정책은 지역에 각종 위험을 외주화시킨 결과를 낳았다.

환경피해 또한 산업시설 인근 마을에 국한하여 발생되지 않았다. 대기오염물질은 풍향에 따라 배후지역으로 조성되었던 지역 도심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퍼져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경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 수행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를 통해 충남 대산지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과소평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NASA, 2020), 충남 서북부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2019년도 유증기 사건 발생했었을 때 그 때 을지대병원에서 건강영향 조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때 유증기가 나와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없다고 작년엔 했어요. 그렇게 발표가 나왔음에도 주민분들은 계속 요구를 하시는 거죠. 야. 보도가 그렇게 나오는건 뭐가 잘못된거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암 발생률이라던지 건강영향조사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처음에 이런 나사(NASA) 같은 이슈가 나왔을 때, 그래 니들이 뭐를 우리에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참여자2]

대규모 산업시설의 운영은 부대시설의 증가를 요구한다. 송전설비, 도로,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이 대대적으로 확충되면서 2차 오염이 발생했다. 자원 수송을 위해 도로가 확장되면서 화물트럭이 증가했고 대량의 비산먼지가 생성되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또한 늘어났다.

한편 이 지역의 환경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산만 광역개발 계획 논의 초기부터 존재했다. 학계 및 지역 일각에서는 지역경제개발에 있어 환경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녹지공간 공단부지면적 20% 이상 확보, LNG 등 산업용 연료의 청정 에너지화, 바다 적조현상 방지 등 수질보전을 위한 공단 배출물 관리, 신도시 계획 수립 시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조사, 공단 발생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 의무화,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의 공단입주 원칙적 배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김홍진·이춘세·김병수, 1995).

### 3) 환경과 인권에 대해 교육받고 정보에 접근할 권리

1970년대 후반 정부가 경제성장 정책과 재정 운용 대부분을 주도하던 상황에서, 간척사업 등 많은 국가 주도 개발사업들은 대단위 중

합개발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지역사회에는 대규모 재정투입이 계획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낙후되었던 지역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 기업 유치를 허용했다(김광구·김동영·이선우, 2015).

충남 서북부지역에 국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또한 1970년대 말경으로, 당시 서산시는 민간발전사업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부 부처의 사업 진행 절차에 협조하였다. 산업시설 입지가 결정 이후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공시 및 환경영향평가 등이 진행되었다. 기업 유치 과정에서 난개발과 투기를 우려하거나 지자체장의 행동과 결정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있었지만, 인권이 억압되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적극적 의사표현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대체로 경제개발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산업시설 건립계획이 공시되었어도 정보 열람 기한이 존재했고,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심지어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지방세로 내분화 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투명하지 않게 사용되기도 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군수 째짓돈처럼 쓰거나 대부분 치어방류하거나 주민들에게 선심성 행사를 자기 군에서 하는 것처럼 생색내기 형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누이 얘기해도 행정도 맞들인 거죠. 그렇게 썼던 돈이 있고 정치적으로 쓰고 싶은데 그게 없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다보니 쉽게 바꾸지 않더라고요.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 비용도 높여라 요구해서 높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참여자2]

한편 기업은 행정과 사회의 변화 속에서 나름의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대기오염, 분진 등을 저감할 최신설비를 도입하여 법적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감시설, 매뉴얼 등의 적합성도 재차 확인하고 있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ESG)이라는 경제성장중심 패러다임의 전 세계적 전환에 맞추어 지역 상생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로 인

식하는 사업장 인근 거주 주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사회공헌사업 실시 전에는 최대한 주민들의 필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내 소통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인원을 대폭 확충한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된 조치다.

저희도 이제 그 공정 중에서 그런 가루라던가 이런걸 안 날리게 하계끔 환경투자를 계속하고 있는거고. 말씀드렸던 지역 상생 사업들도 꾸준히 하고 있고. 예산도 지금 매년 늘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활동들.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팀을 또 이렇게 만들고. 저희가 ○○소통팀이 두 개 팀이 합쳐졌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인원이 되게 늘어났어요. 그만큼 인원 보장을 하면서 되게 뭐 미처 못 챙긴 것까지 다 챙겨나가겠다 뭐 그런 노력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CEO가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근거들을 이제 쪽 뽑아 볼 때 제일 많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 그런 것들 많이 반영되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팀도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고. 저희가 지금 안전도 그렇지만 환경 투자금액이 2025년,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한 4천 6백억 정도를 투자할 거거든요. 그런 금액을 결정하는 건 쉽지가 않죠. [참여자2]

특히 고무적인 변화는 사고 발생 이후 기업의 대응 방식이 이전과는 다소 달랐다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을 강조하거나 금전적 배상을 했던 관행에만 매몰되지 않고 지역사회라는 무대에 등장해 공정에 대한 이해와 물리적 한계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 대화를 시작하고자 했다. 적대적이었던 사업장 인근 및 지역 거주민과의 관계를 극복하고 공존의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사고 발생 시 즉각적 대처가 용이하도록 소방서, 방제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상황판단관 등을 양성하기로 하거나,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참여하였다.

2020년, 충남도 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에 속한 기업들은 도민 건강권 확보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기업들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전환적 조치 대다수는 행정적, 정책적 규제와 압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진다.

#### 4) 환경재난에 대한 법적 구제 및 보상받을 권리

권위주의적 정권 아래에서 수립된 제반 정책들로 주민들은 몇 대에 걸쳐 내려오던 토지뿐만 아니라 고향, 이웃들, 친구들을 잃게 되었다. 토지의 수용을 끝까지 반대했어도 주변지역 토지가 수용대상일 경우 수용을 막아낼 수 없었다. 고향을 떠나 다른 마을에 거주하게 된 주민들은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던 수용부지 인근으로 돌아가 생계 활동을 지속했다.

특히 민간기업들에 의한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 서산은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주로 민간차원의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져 왔다. 공단 설립 이후 수십 년간 분쟁을 거듭하며 조성된 기업-주민 대표단 간의 협의 방식은 주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했다. 산업단지 관리주체 또한 실질적 관리주체인 서산시, 제도적 관리주체인 충남도로 양분되어 안정적 행정 집행이 요원한 상황이었다. 또 민간기업이 배상할 경우 배상금의 집행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자주 발생했다.

서산이 그렇게 양쪽으로 사방으로 포획이 되어서 대기질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서산은 피해는 고스란히 받지만 그런 제도적인 것들은 받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민간기업이 땅을 자기들이 어쨌든 매립해 그 안에서 하는거라 때문에 법적 기준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행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다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산단이 서산시라는 지역에 있지만 산단을 관리하고 아니면 법적인 것 안에서 승인하

고 이라는 주체는 또 충남도예요. 이게 다 나뉘져 있어요. 지자체가 해야 될 몫이 실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결을 하고. [참여자1]

또한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법적 구조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 조치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주민들은 건강권, 재산권 등 다양한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고 느꼈지만 특정 업체에서 실제 해당 물질이 배출되는지, 어떠한 유해요인이 건강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역량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환경오염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그동안 거의 없었음을 토로한다.

### 5) 건강한 생태환경에서 발전할 권리

오래전부터 각종 어류, 김, 굴 등 어족자원 취득뿐만 아니라 염전 등의 어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충남 서북부 지원은 자원만큼이나 다채로운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던 곳이었다. 많은 주민에게 이 지역은 나고 자란 고향이었다. 이웃은 친구이기도 했지만 먼 친척이기도 했다. 환경권에 따르면 주민들이 기억하는 과거의 환경은 이들이 누리고 있었던 하나의 권리가 된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이 지역에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오면서 생태계는 급속하게 악화되었고 전통적 방식의 어업과 농업은 중단되었다. 정부의 지원과 간척지의 확보로 농업은 지속될 수 있었지만 대기 및 토양오염은 농작물의 질을 떨어트렸다. 환경 실태가 알려지면 농작물 판매에 영향을 미치기에 문제 개선을 위한 많은 활동 또한 제한되었다. 주민들은 환경과괴,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는 활동에 자유롭게 나서기 어려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의 몸에도 이상이 발생했다. 공해, 악취, 온실가스 등 수많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신체 내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석유와 석탄, 즉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의 밀집은 급속한 속도로 생태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온배수와 해양 오염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해 왔던 어업활동 대부분이 중단되었고, 쇠파우 등 분진은 농업에도 지장을 주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의 거주 환경 및 건강과 관련된 대책 마련에 미비했다. 행정은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응하면서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묵인하거나 소극적으로 공고하였고, 채널 간 중재자로서 의사소통 역할에도 소홀했다. 오히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를 제시했을 때 비로소 환경오염 문제를 인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해요소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민 본인이 그것을 증명해야 했다. 지자체는 산업시설 입지와 가동, 환경문제의 발생에 따른 모든 과정에서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여겼다. 이에 주민들은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해서 일부 신뢰하면서도 조사방식, 결과 안내 등에 대한 절차적 과정을 불신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마을 공동체 와해와 이웃 간 대립, 행정과 기업에 대한 불신 등 복합적 이유로 인해 발생한 소외감, 걱정, 불안에 대한 조사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었다. 도로, 보건, 교통, 교육 등 기본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또한 상대적으로 낮았다.

비소는 어패류에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생선을 많이 먹어서 그런 영향 때문일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픈데, 이것 때문에 아플 수 있는데 꼭 이거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 이거 때문에 아픈걸 내가 증명해. 이게 말이 되냐고요. 회의에서 끝나고 자료 보내라 하면 잘 안 보내고요. 이걸 외부유출이 안된다 그래서 계속 싸웠어요. [참여자2]

결과적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마을공동체에 갈등이 상존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풍습과 문화, 삶의 양식은 붕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여성 등 취약계층일수록 피해가 가중되지만 이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는 쉬이 확보되지 않았다.

### 6) 환경오염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저항할 권리

산업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나 지자체는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오히려 후속 대처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보상에 있어 기업과 피해당사자인 개인은 직접 소통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마을 이장 등 지정된 특정 인원만이 핫라인을 통해 협의하고 있었다. 기업-주민-지자체 또는 정부 간 의사소통 체계 또한 미흡해 주민들은 행정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의사소통은 대부분 마을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대외적 정보는 환경운동 단체, 지역 언론사 등의 매체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동안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에 다양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영도 매우 어려웠다. 1990년대 화력발전소 입지 초기에도 별도의 의견 수렴이나 공유 절차가 없었다. 주민들이 석탄으로 인한 위해를 거의 파악하고 있지 못했을 정도였다. 이 지역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정보가 알려지게 된 것은 2010년대 후반 탈석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부터였다.

정보 전달과 공유가 미흡한 상태에서 주민과 기업은 참여한 대립을 반복했고, 이는 기업이 주민에게 별도의 공지 없이 행정과 비밀리에 입지를 결정하는 원인이 되었다. 기업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입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 마을 공동체에 큰 분란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산업시설 입지와 관련된 대부분의 조사과정과 한국전력, 민간기업, 행정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정보를 취득하고자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열람할 수 있었지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료가 제공되었고 설명회, 공청회는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

주목할 점은 최근 주민, 시민단체, 노동자, 전문가, 행정,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한 대책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2019년 서산시 일반산업단지 내 한화토탈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폭발 사고 이후, 사측이 민관 협의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플랜트노동조합, 한화토탈노동조합, 대산읍이장단, 지곡면주민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다.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사고원인 조사에 함께하는 이 과정은 사고의 지리적 범위를 산업단지 인근을 넘어 서산시 전체로 확장하였고, 지역 주민 모두가 공통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연대감을 가지게 하였다.

우리가 한화토탈 사고 이후에 민간감시단 꾸려질 때 목표가 그런거였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걸 좀 더 환경이나 안전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그리고 혹시 지원이나 이런걸 하더라도 뭐 개인이나 마을에 보상하는 차원으로 그냥 끝나지 말고 이후에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정말 대산 쪽에 지역민들이 원활하게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의료 관련된 거라도 제대로 있던가 뭔가를 해보자. [참여자1]

##### 5. 나오면서: 실체적 환경권 구성을 통한 인권 담론의 확장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난제로 설정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주민들

이 느끼고 있는 실제적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인권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과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한 보다 풍부한 함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연구자는 환경권이 ‘개인 및 공동체, 지구 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최대한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이자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 또는 훼손을 예방할 인간의 의무’를 가진 권리로써, 세대별 인권개념을 가로지르는 통합적 구조를 내재함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환경권이 개인의 권리를 초월한 ‘집단으로서의 연대권’의 필요성을 강하게 추동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환경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난제를 해소하는 데 인권 통합적 접근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최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선 충남 서산 대산공단 인근 마을주민들은 지구와 생명공동체의 보호를 고려한 자원이용, 환경보호와 평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과 인권에 대해 교육받고 정보에 접근할 권리, 환경재난에 대한 법적 구제 및 보상받을 권리, 건강한 생태환경에서 발전할 권리, 환경오염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저항할 권리를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침해받고 있었으며, 때로는 권리 개선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아래에서는 환경취약지역이라는 지리적 공간과 관련된 권리보유자, 의무담지자에게 어떠한 권리 저하 및 증진이 발생되었는지 살펴본다.

첫째, 인권 매커니즘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권침해 사안에 있어 가장 심각한 권리의 박탈을 경험하는 대상은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이다.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로 초래된 환경위기 속에서 이들은 불평등과 사회적 소외에 가장 빨리 노출된다.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인권침해의 핵심적인 권리보유자로서 인권침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인 권리라는 언어를 가진다. 자신의 피해를 권리로써 주장하는 것은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는 마치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해 명확한 병명을 파악하고 처방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재산권이나 생존권 등과 같은 인권에 대한 한정된 이해는 그동안 대산공단 인근 마을주민들이 침해당한 수많은 권리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와 같은 집단 대응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서 주민들은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문제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에서 정부는 제도적 가해의 역할을 담당하며, 기업은 실제적 가해의 역할을 행한다. 인권의 의무담지자인 국가는 제도 입안 및 실행 과정에서 피해를 억제하거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재원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체제 유지를 위해 특정 이데올로기를 수호할 목적으로 인권침해를 암묵적으로 정당화해왔다. 특히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 생태계에 산업시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특정 지역에 기후위기 원인시설을 밀집시켰고, 지역 주민들의 각종 권리를 침탈해왔다. 이러한 연쇄적 인권침해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정부는 전통적 개발 패러다임 속에서 이 행되었던 산업화·도시화 정책과 환경보전 정책의 실패를 직시하고, 환경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생태적 관점으로 기존의 개발 담론을 재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탈석탄 및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민주적 방식과 불평등 저감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형태의 거버넌스를 이행할 때 가능하다.

셋째, ‘권리의 난제’로 여겨지는 오랜 인권 문제의 해결은 인권이 존재하는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창조하는 인권당사자, 즉 권리보유자와 의무담지자가 상호문제를 인식하고 행동할 때 가능하다. 이들의 인식 전환, 즉 상호 공감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인권의 관점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은 그러한 관점으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 원인시설 인근 지역의 문제는 기

후변화로 인한 재난, 나아가 기후변화를 촉진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 타개는 기존의 인간중심적 가치나 제도적 관행을 생태적 원리를 중심으로 재편할 때 가능하다. 이제 정부는 생태적 관계를 중심으로 권력을 재배분하고 ‘국가정치’의 생태적 지배영역’을 지구적·지방적 차원으로 확장해야 한다. 또한 국가, 시민사회, 시장 영역의 행위자가 기존의 배타적 권위 관계를 버리고 동등한 관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녹색 거버넌스, 즉 연대와 결합을 통해 사회문제를 사안별, 영역별로 협의하고 해결하는 체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조명래, 2002: 59-61). 리우 지구정상회담의 혁신적 구호,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 act local)’라는 언명을 몸소 실천하는 작업 속에서 우리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정책적 전환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와 관련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연대로써, 다시 말해 국가이익 관념의 재구성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류가 쌓아온 인권에 대한 열망이 인권 관련 선언, 논평뿐만 아니라 인권정전에 근거한 지역공동체의 원칙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 또한 평범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인권정전이라는 구체적 문서에 근거해 권리로 정리하여 보다 강력한 방식으로 인권 증진을 요구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인권의 증진은 권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작되며, 이것이 행동으로 구현될 때 억압적 사회구조가 변화할 수 있다.

(논문접수일: 2023. 5. 23, 논문심사일: 2023. 6. 12, 게재확정일: 2023. 6. 20)

## 참고문헌

- 고문현. 2005. “제3세대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환경법연구』 27(4): 265-282.
- 구병삭. 1990. 『신한국헌법론』. 서울: 일신사.
- 권영성. 2010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권혜령. 2018. “인권개념의 세대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56: 87-113.
- 김광구·김동영·이선우. 2015. “화력발전소 입지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21-44.
- 김우창·윤순진. 2019.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사업 합의의 의미와 맥락: 합의 주민의 관점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23: 268-307.
- 김철수. 2013. 『헌법학신론』. 서울: (주)박영사.
- \_\_\_\_\_. 2020. “국제 인권현장의 현재와 미래.”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59(1): 213-573.
- 김현준. 2020. “지구법학과 경제법.” 강금실 외. 『지구를 위한 법학: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홍균. 2006. “수도권대기질 개선을 위한 총량관리제.” 『저스티스』 91: 151-165.
- \_\_\_\_\_. 2008. “국제환경법에서의 환경과 인권.” 『인권과 정의』 385: 56-71.
- 김홍진·이춘세·김병수. 1995. “아산만 광역권 지역경제 발전방향.” 『순천향사회과학연구 논문집』1(2): 181-203.
-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구도완. 2005. 『환경권 분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2017년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보고서』. 충청남도.
- 단국대학교 의료원 환경보건센터·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2014. 『충청남도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 충청남도.
- 마크 프레초. 2020. 『인권사회학의 도전』. 조효제 옮김. 서울: 교양인.
- 명형남. 2014. “석탄화력발전과 미세먼지, 그리고 건강.” 『열린충남』. 충남연구원.

- 박병도. 2018. “인권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소고.” 『환경법연구』. 41(2): 71-105.
- 박병도. 2019. “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일감법학』. 42: 111-143.
- 박시원. 2019. “기후변화와 인권침해 소송.” 『환경법과 정책』 23: 37-69.
- 박태현. 2011. “지구법학과 경제법.” 강금실 외. 『지구를 위한 법학: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소병천. 2009. “자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환경법적 소고.” 『환경법연구』 31(2): 263-290.
- 신윤진. 2021. “국제인권조약 당사국의 역외 인권의무.” 『인권연구』 4(1): 101-176.
- 오동석. 2020. “지구법학과 경제법.” 강금실 외. 『지구를 위한 법학: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상수. 2015. “기업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의 구조: 밀양 송전선 분쟁에 대한 사례연구.” 『법과사회』 48: 127-165.
- 이은기. 2015. “환경인권에 관한 소고.” 『환경법연구』 37(2): 321-352.
- 이주영. 2017.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개념의 발전과 ‘연대권’ 논의의 함의.” 『다문화사회연구』 10(2): 33-57.
- 장은주. 2006. “사회권의 이념과 인권의 정치.” 『사회와 철학』 12: 187-216.
- 정진성. 2013. “인권사회학의 형성과 발전.” 전진성 외. 『인권사회학』. 서울: 다산.
- 정혜진. 2020. “지구법학과 경제법.” 강금실 외. 『지구를 위한 법학: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조명래. 2002. “국가론의 녹색화를 위한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36(2): 47-68.
- 조윤재. 2019. “기후변화와 인권: 환경과피 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 『외법논집』 43(2): 115-144.
- 조효제. 2018. “인권실현의 통합적 접근.” 『인권연구』 1(1): 37-71.
- \_\_\_\_\_. 2020. 『탄소 사회의 종말』. 파주: 북이십일 21세기 북스.
- 카렐 바삭 외. 1986. 『인권론』. 박홍규 옮김. 서울: 실천문화사.

- Anderson, Michael. 1996. "Individual Rights to Environmental Protection in India" In: Boyle, Alan and Anderson Michael (Ed.) Human rights approaches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n overview. Oxford: Clarendon Press.
- Blau, Judith and Moncada, Alberto. 2009. Human Rights. New York: Routledge.
- Domaradzki, Spasimir and Khvostova, Margaryta and Pupovac, David 2019. "Karel Vasak's Generations of Rights and the Contemporary Human Rights Discourse." Human Rights Review 20: 423-443.
- Francioni, Francesco. 2010.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an Environmental Horizon."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1(1): 41-55.
- Goodmark, Leigh. 2005. "Telling Stories, Saving Lives: The Battered Mothers' Testimony Project, Women's Narratives, and Court Reform." Arizona State Law Journal 37: 709-757.
- Handl, Gunther. 1992. "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Stockholm Declaration), 1972 and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 2021년 1월 12일 검색. URL: <https://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4>
- IPCC. 2021.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ted Kingdom and New York, NY, USA, 2391 pp.
- \_\_\_\_\_. 2022.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option and Vulnerability.'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3056 pp.
- Jellinek, Georg. 2006[1892]. System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Freiburg: Adeg Graphics LLC.
- Le Moli, Ginevra. 2020. "The Human Rights Committe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Right to Life.”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69: 735-752.

NASA. 2020.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 KORUS-AQ 최종 종합보고서. 환경부 번역본.

Sands, Philippe. 2003.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asak K. 1977. “Human Rights: A Thirty-Year Struggle: the Sustained Efforts to give Force of law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ESCO Courier 30(11): 29-32.

[언론보도]

서울파이낸스. 2022.10.31. “‘탄소중립? 난 몰라!’ 현대오일뱅크, 정유 4사 중 온실가스 증가율 최고…5년간 43%” URL: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914>. 검색일: 2023.5.16.

조선일보. 2009. “[Why] 30년 전의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 잊혀진 가로림만에 가보니.” 『조선일보』. 12월 12일. 검색일: 2023.05.17.

중앙일보. 2021.10.10. “문정부, 탄소중립 급가속…세계 ‘제조업 현실 고려해야.’”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3500#home>. 검색일: 2023.4.18.

한겨레. 2021.10.18.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최종안... 산업계·기후단체 모두 반발.”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5619.html>. 검색일: 2023.4.18.

[공문서·통계자료]

대한민국정부 관보 건설부고시 제1994-5423호.

대한민국정부 관보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04호.

충청남도 서산시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1977. “서산-대산선 도로 확장공사 발주 의뢰.”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환경부. 「국가온실가스통계」. URL: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99\\_2800020&vw\\_cd=MT\\_ZTITLE&list\\_id=T\\_](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99_2800020&vw_cd=MT_ZTITLE&list_id=T_)

2&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  
=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검색일: 2023.4.13.

[웹사이트]

녹색연합. 2021.10.28. “[보도자료] 기후정의 외면한 한국은 기후악당 벗어  
날 수 없다” URL: [https://www.greenkorea.org/activity/weather-change  
/climatechangeaction-climate-change/90314/](https://www.greenkorea.org/activity/weather-change/climatechangeaction-climate-change/90314/). 검색일: 2023.4.18.

UNEP. “The Environmental Rights Initiative.” 2018년 03월 06일 수정. 2021  
년 09월 16일 검색. URL: [https://www.unep.org/resources/factsheet/en  
vironmental-rights-initiative-fact-sheet](https://www.unep.org/resources/factsheet/environmental-rights-initiative-fact-sheet)

[인권정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산살바도르 의정서(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Social and Cultural  
Rights(Protocol of San Salvador)). 1988.

세계지구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Mother Earth Rights).

아프리카 헌장(African(Banjul)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1981.

지구헌장(Earth Charter). 2000.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 1998.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선언(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1972.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Draft Principles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The Ksentini Principle)). 1994.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Handl, Gunther. 1992. “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Stockholm Declaration), 1972 and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 2021년 1월

12일 검색. URL: <https://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4>

UN Human Rights Committee. 2019. “Portillo Caceres v Paraguay” CCPR/C/126/D/2751/2016.

\_\_\_\_\_. 2020. “Ioane Teitiota v. New Zealand (advance unedited version)” CCPR/C/127/D/2728/2016.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for Expansion of Meaning of  
Environmental Rights  
: Focusing on Residents Near the Daesan Petrochemical Complex  
in Seosan**

Kim, Min Sung\*

Recently, Interest in environmental rights has increased in the face of serious global climate change. This study presents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rights as human rights’ by focusing on discourse that emphasizes a transformative attitude toward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s.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have been understood as a new category of human rights. However, environmental rights, as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emphasize collective concepts such as community or people. Thus, solidarity can be very useful in addressing contemporary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By analyzing the Human Rights Canon since the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 becomes clear that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rights demonstrates the essence of universality, indivisibility, and interdependence of human rights.

For example, residents of villages near the Daesan Petrochemical Complex in Seosan, Chungcheongnam-do, who have suffered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petrochemical plants for decades. They have been violated various rights such as ‘rights related to resource use considering the protection of the earth and the

---

\* Gyeonggi-do Social Impact Creators.

community of life, rights rela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consider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quality, rights related to receiving educat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rights related to legal remedies and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isasters, rights related to developing in a healthy ecological environment, and rights related to participating in decision-making and resisting environmental pollution, rights rela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consider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quality, rights related to receiving educat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rights related to legal remedies and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isasters, rights related to developing in a healthy ecological environment, and rights related to participating in decision-making and resisting environmental pollution'. Sometimes, they have faced new phases of rights improvement. In this situation,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environmental issues was demanded strongly.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rights was very useful in explaining their situation and asking for responsibility. The environmental rights as human rights presented in this study can help promote fundamental solutions to environmental problem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Keywords: Environmental Rights As Human Rights, Environmental Issues, Environmental Rights, Generations Of Rights, Daesan Petrochemical Complex, Climate Change